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856호 2023. 10. 5.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23-240호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준공 고시 1

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23-1334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2
- 사천시 공고 제2023-1345호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9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사천시 고시 제2023-240호

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준공 고시

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11번지선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공사에 대하여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(준공검사)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5일

사 천 시 장

1.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연월일 : 2023. 9. 11.
2.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
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매립목적 : 굴박신 공동작업장 부지조성
4.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 :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11번지선
 - 나. 면 적 : 984.3m²
5.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: 2022. 10. ~ 2023. 7. 끝.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1334호

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3년도 소곡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5일

사 천 시 장

소하천명	사업 개요								비고	
	공사명	공사 위치		사업량(m)			공사기간			공사 목적
		시작하는 지점	끝나는 지점	축제 (築堤)	호안 (護岸)	기타	착공	준공		
소곡천	소곡소하천 정비공사	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75-50	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1024-62	882	165	-	2023년 11월	2025년 12월	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	보상 1식

열람서류

1. 도시관리계획(하천:소곡소하천) 결정(변경)
2. 도시계획시설(하천:소곡소하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
3. 실시설계도서
4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<사천 도시관리계획(하천:소곡소하천) 결정>

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

1.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

가. 하천(소곡소하천)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		연장 (km)	폭원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		
신설	⑩	소곡 소하천	소하천	정동면 학촌리 875-50	정동면 소곡리 971-1	-	0.7	9.0~16.5	13,283	-	

나. 하천(소곡소하천) 시설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⑩	소곡 소하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하천정비 A=13,283㎡ (L=0.7km, B=9.0~16.5m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(하천:소곡소하천) 결정하고자 함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〈도시계획시설(하천:소곡소하천) 사업 실시계획인가〉

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

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정동면 학촌리 875-50 ~ 소곡리 971-1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하천:소곡소하천) 사업

나. 명 칭 : 소곡소하천 정비공사

3. 면적 또는 규모 : 하천정비 A=13,283m²(L=0.7km, B=9.0~16.5m)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사천시장(건설과장)

나. 주 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5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(변경)

가. 착 수 일 : 실시계획 인가일

나. 준공예정일 : 2025. 12. 31.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연번	위 치				지목	면 적(㎡)	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권리의 종류 및 내용	비고
	면	리	지번			대장	편입	성명	주 소	성명	주 소		
합계						114,785	1,915						
1	정동	학촌	875-50	천	88,082	450	국토교통부						
2	"	"	33-7	천	291	31	경상남도						
3	"	"	706	천	2,465	39	경상남도						
4	"	"	706-3	답	13	13	김O확	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	사천농업 협동조합	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읍성로	근저당	706-1 에서 분할	
5	"	"	707-1	답	40	40	강O영	경남 사천시 정동면 신월2길	정동농업 협동조합	경남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	근저당	707 에서 분할	
							김O영	경남 진주시 말티고개로					
6	"	"	141	구	22,501	965	농림축산식 품부						
7	"	"	708-6	답	25	25	김O확	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	사천농업 협동조합	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읍성로	근저당	708 에서 분할	
8	"	"	708-3	수	494	7	환경부						
9	"	"	708-4	수	484	4	환경부						
10	"	"	708-5	수	54	5	환경부						
11	"	"	708-7	답	9	9	김O확	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	사천농업 협동조합	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읍성로	근저당	708-1 에서 분할	
12	"	"	708-8	답	29	29	김O확	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	사천농업 협동조합	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읍성로	근저당	708-2 에서 분할	
13	"	"	709-3	답	12	12	김O확	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	사천농업 협동조합	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읍성로	근저당	709 에서 분할	
14	"	"	709-4	답	7	7	김O확	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	사천농업 협동조합	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읍성로	근저당	709-1 에서 분할	
15	"	"	710-2	답	2	2	김O근	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향교로				710 에서 분할	
16	"	"	43-11	전	10	10	황O환	경남 사천시 정동면 소곡길	농협은행 주식회사	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	근저당	43-3 에서 분할	
17	정동	학촌	712-4	답	19	19	김O점	경남 사천시 정동면 이동길	정동농업 협동조합	경남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	근저당	712 에서 분할	
18	"	"	712-5	답	61	61	최O경	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				712-1 에서 분할	
19	"	"	712-6	답	87	87	김O철	경남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				712-2 에서 분할	
20	"	"	44	천	100	100	최O협	소곡리				미등 기	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연 번	위 치			지 목	면 적(㎡)	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권리의 종류 및 내용	비고
	면	리	지번		대장	편입	성명	주 소	성명	주 소		
21	"	"	702	도	4,537	485	농림축산식품부					
22	"	"	712-7	답	281	281	박O갑	서울 관악구 봉천동				712-3 에서 분할
23	정동	소곡	1024-1	천	103,274	2,281	국토교통부					
24	"	"	400-34	답	139	139	박O문	경남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				400-1 에서 분할
25	"	"	400-23	천	141	141	사천시					
26	"	"	400-24	천	154	154	사천시					
27	"	"	402-1	천	144	144	사천시					
28	"	"	400-35	답	58	58	박O문	경남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				400-3에 서 분할
29	"	"	400-16	수	500	26	환경부					
30	"	"	400-29	천	66	66	국토교통부					
31	"	"	400-22	수	60	19	환경부					
32	"	"	400-40	답	2	2	박O문	경남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				400-19 에서 분할
33	"	"	402-5	수	33	33	환경부					
34	"	"	402-2	천	86	86	사천시					
35	"	"	400-37	천	175	175	박O문	경남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				400-8에 서 분할
36	"	"	400-26	천	123	123	사천시					
37	"	"	400-36	천	72	72	김O철	서울 강남구 개포동				400-5에 서 분할
38	정동	소곡	400-25	천	68	68	사천시					
39	"	"	400-38	대	5	5	김O희	사천시 정동면 소곡리				400-10 에서 분할
40	"	"	400-39	대	3	3	김O희	사천시 정동면 소곡리				400-12 에서 분할
41	"	"	400-27	천	22	22	사천시					
42	"	"	400-28	천	4	4	사천시					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연번	위 치			지목	면 적(㎡)	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권리의 종류 및 내용	비고
	면	리	지번		대장	편입	성명	주 소	성명	주 소		
43	"	"	388-18	대	2	2	권O자	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				388-1에서 분할
44	"	"	388-17	천	44	42	사천시					
45	"	"	1033-1	구	252	39	농림축산식품부					
46	"	"	1022-1	도	1,782	20	국토교통부					
47	"	"	403-9	도	4	4	박O목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				
48	"	"	403-8	천	308	308	사천시					
49	"	"	403-10	천	193	193	박O숙	인천시 부평구 십정동				403-2에서 분할
							박O숙	경남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				
							박O순	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				
							박O숙	경남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				
50	"	"	443	도	1,820	344	농림축산식품부					
51	"	"	443-4	답	110	110	김O철	서울시 강남구 개포동				443-1에서 분할
52	"	"	404	답	152	152	최O경	사천시 정동면 소곡리				미등기
53	"	"	443-5	답	123	123	강O순	경남 사천시 사천읍 동문로				443-2에서 분할
54	"	"	443-6	답	30	30	최O석	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				443-3에서 분할
55	"	"	408-8	답	13	13	박O용외1인	경남 진주시 창렬로43번길	김O숙	경남 진주시 창렬로43번길	지분 2분의1	408-7에서 분할
56	정동	소곡	437	구	4,193	566	농림축산식품부					
57	"	"	419	도	458	397	농림축산식품부					
58	"	"	440-7	도	383	25	사천시					
59	"	"	440-19	답	231	231	옥O정	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	사천축산업협동조합	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	근저당	400-17에서 분할
60	"	"	429-7	도	90	12	사천시					
61	"	"	429-8	답	55	55	조O옥	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4길				429-1에서 분할
62	"	"	429-9	답	144	144	박O탁	부산시 북구 화명동				429-2에서 분할
63	"	"	429-10	답	58	58	권O혁	정동면 소곡리				429-3에서 분할
64	"	"	434	도	422	422	농림축산식품부					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연 번	위 치			지 목	면 적(㎡)	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권리의 종류 및 내용	비고
	면	리	지번		대장	편입	성명	주 소	성명	주 소		
65	"	"	430-6	답	27	27	최O경	사천읍 평화리				430-1에서 분할
66	"	"	430-7	답	61	61	최O경	사천읍 평화리				430-2에서 분할
67	"	"	430-8	답	93	93	삭녕최씨몽 대종중	정동면 소곡리				430-3에서 분할
68	"	"	430-9	답	155	155	권O혁	진주시 망경동				430-4에서 분할
69	"	"	430-10	답	181	181	권O옥	경남 사천시 정동면 쇠실1길				430-5에서 분할
70	"	"	435-1	답	189	189	이O보	정동면 소곡리				435에서 분할
71	"	"	1024-62	천	15,079	2,543	국토교통부					
72	"	"	970-4	전	106	106	권O혁	정동면 소곡리				970-1에서 분할
73	"	"	970-5	구	12	12	김OO호	정동면 소곡리				970-2에서 분할
74	"	"	440-10	도	36	36	사천시					
75	"	"	440-4	도	13	13	권O석	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15번길				
76	"	"	440-5	도	23	12	사천시					
77	"	"	440-18	답	15	15	전O미	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	새고성 농업협 동조합	경남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7길	근저당, 지상권	440-2에서 분할
78	정동	소곡	440-11	도	67	10	사천시					
79	"	"	441	도	126	15	최O협	정동면 소곡리				
80	"	"	1030	도	390	87	국토교통부					
81	"	"	산71-1	임	54	54	최O응					산71에서 분할, 미등기
82	"	"	1032	도	912	39	국토교통부					
83	"	"	971-1	전	83	38	사천시					
84	"	"	1051	도	198	5	국토교통부					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사천시 공고 제2023-1345호

「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3년 10월 5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나. 자치경찰사무 지원 협의회 설치·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1조)
- 다.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 : 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 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행정과장)

(우편번호 : 52539, 주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 : 831- 2565,
FAX : 831- 6021)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023 - 제 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0. .

제 출 자: 행정과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

2. 제정이유

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나. 자치경찰사무 지원 협의회 설치·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1조)
- 다.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: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: 공보감사담당관
- 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기 간: 2023. 10. 5. ~ 2023. 10. 25.(20일 이상)

나) 제출의견: 없음, 건

다) 반영여부: 반영 건, 미반영 건

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: 반영, 미반영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천시의 특성과 사천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자치경찰사무”란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2호 및 「자치경찰 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·교통·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사천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1.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
 2.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
 3.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
 4.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.
-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자치경찰사무 지원)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및 활동에 관한 사업
2. 안전사고 및 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업
3.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사업
4.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 및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업
5.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
6.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·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관련 기관·단체 간에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·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제8조(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협의회의 설치) 시장은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제9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제2항제1호 각 목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
가. 사천경찰서

나. 사천해양경찰서

다. 사천소방서

라.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

가.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나.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·단체의 대표

다.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·단체의 대표

라. 교통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관·단체의 대표

마.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

바.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1조(협의회 운영)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856호

③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, 간사는 사천시와 사천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시장과 제9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천경찰서 소속 위원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.

제12조(실무협의회의 구성 등) ① 협의회 산하에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.

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 분담을 사전 조정하고, 협의회에서 협의·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.

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폐지) 「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관 련 법 규

□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
·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
립·시행하여야 한다.